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05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448,260원, 농어촌특별세 1,323,06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1996. 8. 2. [redacted]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제1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제1법인이 발행한 주식 130,000주 중 65,000주를 취득하였다(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발행주식 총수 중 원고가 보유한 비율을 '주식 비율').

2) 원고는 2011. 7. 15. [redacted]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제2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제2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고, 2017. 5. 30.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48,532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주식 비율 100%).

3) 제1법인은 2017. 7. 31. 제2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가 합병신주 32,5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원고는 제1법인 발행주식 162,500주 중 97,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주식 비율 60%).

나. 이 사건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제1법인 주식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제1법인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고 보아, 합병 전 제2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이하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게 취득세 15,448,260원, 농어촌특별세 1,323,060원으로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u>이 사건 처분</u>').

3) 원고는 2019.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과점주주에게 법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제1법인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기존 100%에서 60%로 오히려 낮아졌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상법 제52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합병등기 전에 합병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제1법인이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위 자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제11조 제1항).

그 밖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즉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등 참조).

위 법률 규정은 ①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재산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되며, ③ 조세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율 산정 등에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취득세는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통세로서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납부하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지와 그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자산은 제1법인 재산이 되었고, 원고는 제1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제2법인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전에는 이 사건 자산을 소유한 제2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 후에는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제1법인 주식 중 60%만 보유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지위가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법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다고 볼 수 없다.

② 취득세는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는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제1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 법률 규정을 해석할 경우 담세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곳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재산권 제한에 있어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양도, 해당 법인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직접 소유하다가 이를 제1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8918 판결 참조)과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 소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별지

관계 법령

■ 상법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